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 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Use of Gun by Police in China

박 지 성*

차 례

I. 서론	IV. 한국경찰의 총기사용규정 개선방안
II. 총기사용의 주체 및 절차	V. 결론
III. 총기사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국 문 요 약

중국은 일반인의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중국 경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기사용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무고한 시민은 물론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경찰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법령은 「인

민경찰법」, 「인민경찰 장구 및 무기사용조례」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은 총기사용의 주체 및 절차, 법적 근거와 한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일부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중국경찰, 총기사용, 법적 근거, 법적 한계, 입법적 개선

I. 서론

2018년 7월 경북 영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법학박사

찰관 2명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¹⁾ 사건 이후 경찰 내부 커뮤니망인 폴넷(polnet)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무기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총기사용 후 경찰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계속 게재되었다. 2016년 10월 오페산 터널 부근에서 범인의 사제총기에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경찰 내부의 여론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흉기 등에 의한 경찰관 순직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잠시 나타났지만, 대부분 그 기간은 길지 않고 바로 식어버린다. 오히려 경찰의 총기사용은 과잉대응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기 쉽다. 경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의자 또는 제3자의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 징계나 소송 등 개인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²⁾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조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권총은 쏘라고 준 것 아니라, 던져서

1) 남형도, “경찰관, 흉기에 찔려 숨져... “공권력 강화” 여론 봇물”, 머니투데이, 2018. 7. 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816295818948>(2018. 7. 28. 검색).

2) 우리나라 법원은 총기사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총기 이외의 다른 수단의 사용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총기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하체부위를 겨냥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다리 등 부위에 충격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허용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박영길,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국가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165쪽.

범인을 맞추라고 준 것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현장경찰관들의 총기사용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다. 무고한 시민은 물론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총기사용에 대한 경찰관의 냉소적인 반응은 중국도 비슷하다. “총기의 가장 정확한 사용방법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사용방법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일선 경찰관들의 총기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심리를 반영한 말이다.³⁾ “총을 쏘기 전에는 경찰이지만, 쏘고 난 후에는 범죄자가 된다.”, “총을 휴대하고 순찰하는 것은 폭약을 들고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들을 통해 총기 휴대 또는 사용에 대한 중국 경찰관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엿볼 수 있다.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일반 국민의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그러나 그 예외적인 경우가 몇 해 전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여 경찰관 총기사용의 정당성 내지 합법성에 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⁵⁾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아직 선행연구가 없는 중

3) 柴会群, “从“慎用武器”到“敢于亮剑” 警察如何开对枪”, 南方周末, 2014. 5. 22, <http://www.infzm.com/content/100838>(2018. 7. 15. 검색).

4) 黄新宇, “关于警察使用武器的思考”, 中国人民公安大学学报(自然科学版), 2015年第2期, 中国人民公安大学, 95쪽.

5) ① 2015년 5월 2일 중국 헤이룽장(黑龙江)성 칭안(庆安)현 열차역에서 쉬춘허(徐纯合)가 팔손 노모와 어린 자녀 3명을 데리고 기차를 타려다가 검표과정에서 경찰과 다투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펼친 중국 검찰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와 현장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숨진 쉬씨가 열차역 대합실에서 승객들의 출입을 고의

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총기사용의 주체 및 절차, 총기사용의 법적 근거와 법적 한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총기사용의 주체 및 절차

1. 총기사용의 주체

중국의 모든 경찰관이 총기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조건과 일정한 경력을 갖추고, 엄격한 훈련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찰만이 총기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⁶⁾

총기사용의 주체에 대하여는 「공안기관 공무총기 관리사용 규정」(公

로 방해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곤봉을 빼앗아 폭행한 점, 경찰관이 권총을 꺼내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저항을 계속한 점 등이 인정되는 등 당시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경찰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부합하여 합법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http://baike.baidu.com/item/%E5%BE%90%E7%BA%AF%E5%90%88?fr=aladdin>(2018. 5. 21. 검색).

② 2014년 5월 15일 중국 윈난(云南)성, 진슝(镇雄)현에 살고 있던 시골농민 팡주슈(方九书)는 자신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현(县)정부가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물차로 현(县)정부의 정문에 막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후 현지 검찰은 숨진 팡씨가 경찰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칼을 휘두르던 점,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찰차를 충돌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돌진하려고 한 점, 경찰의 수차례 제지와 경고사격에 불응한 점 등으로 보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적절하고 합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http://baike.baidu.com/view/13122444.htm>(2018. 5. 21. 검색).

6) 李华忠, “中国警察使用武器的法定要件及规则”, 政法学刊, 2012年第1期, 广东警官学院, 15쪽.

安机关公公用枪管理使用规定)(이하 ‘총기관리규정’이라고 한다)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총기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찰은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이하 ‘총기관리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부합하고, 정치적으로 확실하고, 근무에 책임을 다하고, 법과 규율을 준수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심리소질이 양호하고, 음주습벽이 없을 것. 둘째,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총기의 성능과 사용, 정비 규정을 습득하고, 연(年)간 사격·정비 기능심사에 합격할 것. 셋째, 「총기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장구 및 무기사용 조례」(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使用警械和武器条例)(이하 ‘무기사용조례’라고 한다) 등 법률법규를 숙지할 것. 넷째, 「총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기록이 없을 것. 다섯째, 경찰경력 1년 이상일 것.

더불어 「총기관리규정」 제6조, 제7조,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공안기관은 총기휴대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론평가와 1회 이상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찰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총기와 총기휴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퇴직이나 인사이동 등의 원인으로 공무 총기를 배치하는 부서를 떠날 경우, ②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자격이나 총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③ 이론평가와 실탄사격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④ 기타 공무 총기를 지급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경우. 즉 이미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자격을 취득한 경찰관이라도 위 네 가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총기를 휴대·사용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7)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 총기휴대증(中华人民共和国公公用枪持枪证)”이다. 총기를 휴대하는 경찰은 총기휴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경찰의 총기사용 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법령보다는 경찰관서의 상급자에게 하급자의 총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은 총기사용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제1항은 무기·탄약의 의무적(‘필요적’으로 교체) 회수 대상으로 “①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③ 사의를 표명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은 무기·탄약의 임의적 회수 대상으로 “①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② 주벽이 심한 자, ③ 변태성벽이 있는 자, ④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⑤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적 판단보다는 상급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총기의 휴대·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총기사용의 절차

중국 경찰관의 총기사용 절차는 현장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는 일반절차로 경찰관이 대상자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하고 있거나, 대상자의 저항 정도가 약하여 경찰관이 대화 또는 설득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는 특별절차로 경찰관과 대상자의 물리적 거리가 근접해있거나, 대상자의 저항 정도가 강하여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일반절차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범죄행위 현장제지에 관한 규정」(公安机糸人民警察现场制止违法犯罪行为操作规程)(이하 ‘현장제지규정’이라고 한다) 제31조는 총기사용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현장상황을 판단한다, ② 경찰신분을 밝히고 총기를 꺼내어 경고한다. 긴급한 경우 총기를 꺼냄과 동시에 신분을 밝힌다, ③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것을 명령한다, ④ 범인에게 폭력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총을 쏘아 경고한다, ⑤ 구두경고나 경고사격 후에도 범인이 계속 폭력을 행사할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고 후에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⑥ 범인이 범행을 정지하고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계속 범행할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사격을 정지하고 경계한다, ⑦ 위험이 제거되었음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총을 들고 경계를 유지한다, ⑧ 위험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후 총기를 내려놓는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총기사용의 절차, 한계, 요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⁸⁾ 다만 절차상으로 총기사용 전에 대상자에게 경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8) 김기재, “경찰상 무기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 제7집, 한국비교법학회, 2007, 148쪽.

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없이 발사할 수 있다. 그 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면,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대상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경찰관은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칼 버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등의 명령을 3회 이상하여야 한다.

2) 특별절차

총기사용의 특별절차란 일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대상자에게 총을 쏘는 경우를 말한다. 「무기사용조례」 제9조 제2항과 「현장제지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첫째, 대상자의 폭력행위가 경고를 할 여유가 없을 긴급한 상황인 경우, 둘째, 경고 후에 총을 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있다.

첫째의 경우는 폭력행위가 현재 심각한 위해의 결과를 초래한 상태이거나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목전에 임박한 상태에 해당하여 구두경고나 경고사격을 먼저 할 경우 폭력행위를 제지할 시기를 놓쳐 더욱 심각한 위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대상자가 폭발물의 작동을 시작시켰거나 경찰에게 총을 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경찰은 경고 없이 바로 대상자에게 총을 쏠 수

있다.

둘째의 경우는 경찰의 경고가 대상자의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여 폭력행위의 위협상황에서 실행상황으로 또는 느슨한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으로 돌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인질범이 경찰의 경고 후 인질을 살해하거나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물 등을 준비한 대상자가 경찰의 경고 후 즉시 이를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중국의 경우 총기의 1탄을 공포탄으로 장전하지 않고 바로 실탄을 장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절차에 해당하여 대상자에게 경고없이 총기를 사용하면 1탄부터 실탄이 발사된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경찰관이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하여야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관이 주로 사용하는 4인치 38구경 권총의 회전식 약실에는 총알 6발을 장전할 수 있다. 시계방향으로 공실(12시 방향), 공포탄(2시 방향), 실탄1(4시 방향), 실탄2(6시 방향), 실탄3(8시 방향), 실탄4(10시 방향) 순으로 장전한다. 따라서 1탄은 원형탄창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한 클릭 회전하여 2시 방향의 공포탄이 발사된다. 즉 긴박한 상황에서 대상자에게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방아쇠를 2번 당겨야 실탄이 발사되도록 장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찰관은 근무교대와 동시에 권총을 인계받으면서 공포탄과 실탄을 장전하고 순찰한다. 따라서 급박한 사건현장에서 장전을 해제하여 공포탄을 제거하고 다시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최초 신고접수를 받을 당시부터 위 제12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의 중요범인인 것을 인지하여 현장도착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근무교대시 장전한 권총의 공포탄과 실탄을 그대로 휴대한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다. 위 단서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장전을 해제하여 1탄부터 실탄이 격발되도록 재장전하는 경우는 희박하다. 결국 시간적으로 근접한 차이지만, 1탄의 공포탄 장전으로 인하여 중국보다 우리나라 경찰관의 실탄격발시간이 물리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Ⅲ. 총기사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총기사용의 법적 근거

1) 인민경찰법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 직접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인민경찰법」이다. 「인민경찰법」 제10조는 “체포에 항거, 폭동, 탈옥, 총기 강취, 기타 폭력행위의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구⁹⁾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으로부터 총기사용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즉 일반

9) 원문은 ‘警械’이다. 「무기사용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경찰장구란 경찰이 규정에 따라 소지하는 경찰봉, 최루탄, 고압물총, 진압용 총기, 수갑, 족쇄, 포승줄 등 경찰용 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적으로 범죄행위의 제지를 위하여 우선 장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체포 항거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제10조는 “체포에 항거, 폭동, 탈옥, 총기 강취” 등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외 현장의 돌발적인 상황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타 폭력행위”에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폭력행위”에도 모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해정도나 긴급 상황이 위 네 가지 상황과 비슷한 정도에 이를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무기사용조례

「무기사용조례」는 무기사용의 원칙과 범위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인민경찰은 위법한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강제수단을 취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장구를 사용하여 제지할 수 없거나 무기를 사용하여 제지하지 않으면 엄중한 위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는 “인민경찰은 경찰장구와 무기를 사용할 경우, 위법한 범죄행위를 제지함에 있어 사람의 사상(死傷)과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두 규정을 종합하면, 인민경찰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중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필요성의 원칙), 국민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최소침해의 원칙)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즉 범죄자에 대한 경한 침해로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면 중한 침해의 수단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중한 침해로 범죄행위를 제지

할 수 있다면 사망에 이르는 침해 수단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례 제9조 제1항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 일수(溢水), 폭발 등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해한 경우, ②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납치하여 공공안전을 고의로 위해한 경우, ③ 총기, 탄약,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강취하여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해한 경우, ④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위험물질로 협박하여 범죄를 행하는 경우, ⑤ 군사, 통신, 교통, 에너지 등 중요시설을 파괴함으로써 공공안전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⑥ 인질을 납치, 살해하는 등의 폭력행위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⑦ 국가가 규정한 경호, 경비, 경계의 대상이나 목표가 습격 또는 파괴를 당하거나, 그러한 피해를 당할 긴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⑧ 집단으로 또는 흉기를 소지하여 공적·사적 재물을 강취한 경우, ⑨ 집단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폭행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회치안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제지가 불가능할 경우, ⑩ 인민경찰의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항거 또는 방해하거나 인민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여 인민경찰의 생명안전을 위해한 경우, ⑪ 수감중인 범인이 집단으로 소란, 폭동, 폭행을 하거나 탈주한 경우, ⑫ 수감 중인 범인을 탈취한 경우, ⑬ 방화, 일수(溢水), 폭발, 살해, 강도 또는 기타 심각한 폭력범죄 후 체포에 항거하거나 도주한 경우, ⑭ 범인이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휴대하고 체포에 항거하거나 도주한 경우, ⑮ 법률, 행정법규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정황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 이 15가지 상황에 해당할지라도, 우선 경고

10) 譙冉 외, “中美警察使用武器裁量权比较研究”, 中国人民公安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7年第6期, 中国人民公安大学, 105쪽.

를 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고 후에는 더욱 중한 위해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 없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제9조 제2항).¹¹⁾

2. 총기사용의 법적 한계

1) 인민경찰법

「인민경찰법」에는 총기사용의 한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인민경찰법」 제49조에 의하면 “인민경찰이 규정에 위반하여 무기,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¹²⁾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무기와 경찰장구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용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징계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11) 2014년 3월 1일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든 10여 명의 괴한들이 시민을 무차별 공격해 29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부상당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특공대원은 현장에서 용의자 4명을 사살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고 후에는 더욱 중한 위해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로서 경고없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侯晓宇, “关于警用枪法律规定的若干思考”, 辽宁警察学院学报, 2016年第3期, 辽宁警察学院, 100쪽.

12) 중국법의 행정처분(行政处分)은 우리나라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말한다. 즉 국가기관, 기업 등이 그 소속된 국가업무종사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징계를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제56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警告), 과실 기재(记过), 대과실 기재(记大过), 강등(降级), 해임(撤职), 파면(开除) 등 6가지가 있다.

2) 무기사용조례

「무기사용조례」 제10조 제1항은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범죄실행 중인 범인이 임산부 또는 아동일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범인이 군중밀집장소에 있거나 인화성 물질, 폭발물,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장소일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하여 제지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총기의 사용을 시작하였으나 그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범인이 범행을 중지하고 인민 경찰의 명령에 복종할 경우와 범인이 계속 범행할 능력을 잃은 경우이다. 이 두 경우는 최초 총기를 사용할 당시에는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상황이었으나, 그 후 상황의 변화로 총기사용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기타 총기사용의 한계와 관련된 법령

「총기관리규정」 제22조는 경찰의 총기사용을 금지하는 일곱 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① 일반치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민사조정사건을 처리할 경우, ②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변화한 지역, 재래시장, 공공오락장소,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물이 있는 장소, ③ 수상한 사람을 검문함에 있어서 폭력적인 항거나 습격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대형집회를 보호하는 근무를 할 경우, ⑤ 도로교통의 정리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경우, ⑥ 타인과 개인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⑦ 총기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위의 「총기관리규정」에서 “총기사용”이란 넓은 의미로 총기로 위협하거나 격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총기를 격발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총기사용”에 대하여는 「현장제지규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총기를 격발할 수 없다. ① 치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도로교통 정리, 교통법규위반단속 등 비(非)형사적인 법률의 집행을 할 경우, ② 현재 실행중인 절도나 사기 등 비폭력 범죄 또는 폭력범죄가 경미한 경우 및 이러한 범죄 후 체포에 항거하거나 도주한 경우, ③ 범죄 실행 중인 범인이 임산부 또는 아동일 경우(단,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범인이 군중밀집장소에 있거나 인화성 물질, 폭발물,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장소일 경우(단, 무기를 사용하여 제지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V. 한국경찰의 총기사용규정 개선방안

1. 총기사용요건의 법적 안정성 제고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규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¹³⁾ 우선 법률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13) 중국은 법률, 법규, 규장이라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하는 기본 법률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법률이 있다. 다음으로 국무원이 정하는 행정법규(국무원령)와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지방성 법규

「인민경찰법」이 있다. 「인민경찰법」은 경찰의 공무집행 중 총기사용권을 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민경찰법」은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 다소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총기사용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개괄적 규정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은 행정법규로서 국무원이 제정한 「무기사용조례」가 있다. 「무기사용조례」는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조건과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문(部门)규장으로 「총기관리규정」이 있다. 「총기관리규정」은 총기의 관리, 사용, 책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총기의 사용은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권인 생명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으로 그 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기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그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¹⁵⁾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하 ‘입법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결정할 권한이 있고,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수요를 근거로 그 중의 부분사항에 대하여 우선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범죄와 형벌, 국민의 정치권리 박탈과 신체자유를

가 있다. 규장(부령) 역시 국무원 소속 각 행정부가 정하는 부문(部门)규장과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지방성 규장이 있다.

14) 仲崇玲·赵国勇, “警察使用枪支的法律规制”, 河北公安警察职业学院学报, 2010年第3期, 河北公安警察职业学院, 62쪽.

15) 王珂, “论警察使用武器中的裁量及其规制”, 北京人民警察学院学报, 2009年第1期, 北京人民警察学院, 39쪽.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사법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할 때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법」의 정신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인 경찰권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거한 법적 근거 하에서 발동될 수 있다.¹⁷⁾ 이를 통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총기사용의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총기사용 조건과 한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약한 「무기사용조례」를 가칭 「경찰 장구와 무기사용에 관한 법률」로 승격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¹⁸⁾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무기사용에 관한 규정도 중국 「인민경찰법」과 같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의 입장도 경찰관의 무기 사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상당성이 구비되어야 하고,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한도에 제한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

16) 陈乾, “当前反恐局势下警察公务用枪法律规制完善之探讨”, 犯罪研究, 2015年第2期, 上海市犯罪学学会, 49쪽.

17) 장병연, “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유럽헌법연구 제14호, 유럽헌법학회, 2013, 287-288쪽.

18) 李晓军, “论警察使用枪支的观念转换与法律规制”, 北京人民警察学院学报, 2011年第4期, 北京人民警察学院, 24쪽.

이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위 규정은 총기사용의 구체적인 요건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관에게 총기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경찰관으로 하여금 총기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현장에서 총기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경찰관 자신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사후의 객관적인 결과까지 고려하여 총기사용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²⁰⁾ 따라서 총기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총기사용여부를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총기사용 제한대상의 명확화

「무기사용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폭력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를 실행중인 임산부와 아동에 대하여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 범인이 임산부와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총기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총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판별기준이 문제된다.

우선 임산부와 관련하여 임신 초기에는 임신 사실이 외형적으로 잘

19)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20) 정신교·김준성,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강원법학 제4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771쪽.

드러나지 않으며, 본인조차도 임신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만삭의 임신부이거나 임부복을 착용하는 등 외형적으로 임신 사실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사용하려는 대상이 임신부인지 여부를 경찰관 개인이 현장에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임산부’ 앞에 ‘사전에(임산부임을) 알았거나 뚜렷한 특징이 있는’ 또는 ‘외견상’ 등의 수식어를 삽입함으로써, 임산부 개인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경찰관의 판단착오는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¹⁾ 즉 사전에 대상자가 임신부임을 몰랐거나 외견상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임신부에 대하여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일반인에 대한 총기사용보다 과중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대상자가 거짓으로 임신부라고 주장하거나 임신부의 외형을 가장한 경우, 경찰관이 임신부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상의 책임을 묻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민경찰법」이나 「무기사용조례」에 ‘아동’의 정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총기사용여부는 대상자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지, 연령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령기준이 없는 ‘아동’이라는 문구는 총기사용여부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중국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14세 미만의 자’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²⁾ 다만 임신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성장의 차이가 있으므로, ‘외견상’ 14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에 대한 총기사용을 금지하는

21) 徐丹彤·苏君静, “我国警察开枪排除情形研究”, 云南警官学院学报, 2017年第1期, 云南警官学院, 81쪽.

22) 徐丹彤·苏君静, 위의 논문, 81쪽.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비슷하게 총기사용의 제한대상으로 14세 미만자와 임산부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즉 규정에 ‘14세 미만의 자’로만 명시되어 있어 그 의미가 주민등록상 나이인지, 실제 나이인지 또는 외견상 나이인지 해석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14세 미만자인지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주민등록상 14세 미만자로 규정해 놓는다면 적법한 상황에서의 총기사용이라도 경찰관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²³⁾ 따라서 현장의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외견상 14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산부에 대한 정의도 위와 같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인의 총기휴대가 금지된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일부 제시하였다.

23) 박창석, “경찰관의 총기사용규정과 해석에 대한 논의”, 한양법학 제18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234쪽.

법적으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 추상적인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 「인민경찰법」은 총기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실제상황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 경찰관에게 총기사용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남용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경찰관이 소송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총기사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공권력의 위축은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비록 「무기사용조례」에 총기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한계가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총기사용에 대한 책임을 경찰관 개인이 아닌, 경찰 조직 또는 국가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총기관리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이 매년 실시하는 이론평가와 실탄사격 심사에 불합격하면 총기를 휴대할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격점수가 미달된다고 하여 경찰관의 총기휴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사격점수 미달자는 일정기간 사격술 향상을 위한 교육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모든 경찰관에게 총기를 지급하기보다는 사격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총기지급을 유보하고,²⁴⁾ 가스총 또는 테이저건을 휴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격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경찰관의 총기 오남용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4) 김기재, 앞의 논문, 159쪽.

그 외 「총기관리규정」 제17조 제5항은 경찰경력 1년이 되지 않으면 총기의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보경찰²⁵⁾에 대한 총기휴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한 때 2인1조 순찰시 조장은 권총, 시보경찰은 가스총을 휴대하도록 한 경찰 내부의 업무지시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의 판단으로 시보경찰의 총기휴대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교육종료 후 현장배치와 동시에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 채용단계에서 인성검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있으나 단기간 다수 인원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무를 통하여 채용과정에서 검증 곤란한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일정기간 관찰 후 정규임용의 적격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보임용제도의 취지이다. 시보경찰관은 사격훈련을 비롯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경험부족은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엄격한 검증절차 없이 총기를 휴대하게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사용과 관련하여 이론적 가치는 있을 수 있으나, 중국자료의 접근성 문제로 실무적 기여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 두 나라 모두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정당하고 소신 있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요건과 한계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 : 2018. 8. 8, 심사개시 : 2018. 8. 20, 게재확정 : 2018. 9. 12.〉

25) 우리나라는 경정 이하 신규 채용된 경찰관에 대하여 1년의 시보기간을 거친 후 임용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정식으로 임용한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논문

- 곽영길,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국가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 김기재, “경찰상 무기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 제7집, 한국비교법학회, 2007.
- 박창석, “경찰관의 총기사용규정과 해석에 대한 논의”, 한양법학 제18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장병연, “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유럽헌법연구 제14호, 유럽헌법학회, 2013.
- 정신교·김준성,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강원법학 제4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2. 판례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3. 기타

남형도, “경찰관, 흥기에 찢려 숨져... “공권력 강화” 여론 붓물”, 머니투데이, 2018. 7. 8.

II. 외국 문헌

1. 논문

陈乾, “当前反恐局势下警察公务用枪法律规制完善之探讨”, 犯罪研究, 2015

- 年第2期, 上海市犯罪学学会.
- 侯晓宇, “关于警务用枪法律规定的若干思考”, 辽宁警察学院学报, 2016年第3期, 辽宁警察学院.
- 黄新宇, “关于警察使用武器的思考”, 中国人民公安大学学报(自然科学版), 2015年第2期, 中国人民公安大学.
- 李华忠, “中国警察使用武器的法定要件及规则”, 政法学刊, 2012年第1期, 广东警官学院.
- 李晓军, “论警察使用枪支的观念转换与法律规制”, 北京人民警察学院学报, 2011年第4期, 北京人民警察学院.
- 譙冉 외, “中美警察使用武器裁量权比较研究”, 中国人民公安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7年第6期, 中国人民公安大学.
- 王珂, “论警察使用武器中的裁量及其规制”, 北京人民警察学院学报, 2009年第1期, 北京人民警察学院.
- 徐丹彤·苏君静, “我国警察开枪排除情形研究”, 云南警官学院学报, 2017年第1期, 云南警官学院.
- 仲崇玲·赵国勇, “警察使用枪支的法律规制”, 河北公安警察职业学院学报, 2010年第3期, 河北公安警察职业学院.

2. 기타

- 柴会群, “从“慎用武器”到“敢于亮剑” 警察如何开对枪”, 南方周末, 2014. 5. 22.
<http://baike.baidu.com/item/%E5%BE%90%E7%BA%AF%E5%90%88?fr=aladdin>(2018. 5. 21. 검색).
- <http://baike.baidu.com/view/13122444.htm>(2018. 5. 21. 검색).

< ABSTRACT >

A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Use of Gun by Police in China

Park, Ji-Seong

Generally, private citizens are not allowed to possess guns in China. Therefore, police officers rarely use guns in the field. However, the Chinese police officers, like Korean, are burdened with using guns. While police officers can carry guns to protect them from threats against the lives or bodies of themselves and innocent citizens,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use of guns often falls upon the individual of police officers.

The laws concerning the use of guns by Chinese police officers include “People’s Police Law”, “People’s Police Use of Police Equipment and Weapons Regulations”. These laws stipulate subjects and procedures for gun use, legal grounds and limitations, but they have problems such as lack of legal stability and clarity.

This study analyzed the use of guns by Chinese police officers based on related laws and examined measure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some problems and alternatives with the related laws regarding gun use by Korean police officers.

◆ Key Words : Chinese Police, Using Guns, Legal Basis, Legal Limits, Legislative Improvement

